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오세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76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29.

발의자 : 오세정 · 김세연 · 나경원

설훈 · 유성엽 · 박경미

김경진 · 김관영 · 이동섭

신용현 · 박주현 · 김병욱

이재정 · 이용호 · 김삼화

김상희 · 송기석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추진 실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전국 4년제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2%이고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%임에도 불구하고 국·공립대 평균 여성교원의 비율은 15%에 불과하여 교원의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와

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11조의5제3항).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의 제목 중 “신규채용”을 “신규채용의 다양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람이”를 “사람이나 성별이”로 한다.

제11조의5제3항 중 “평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를 “매년 평가하여 공표하고, 평가결과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